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2. 6 선고 2016가합550566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기술보증기금

피고1. 주식회사 A

2. B

3. C

4. D

5. E

6. F 주식회사

변론 종결2017. 9. 26.(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하여)

2018. 1. 9.(피고 C, D, E, F 주식회사에 대하여)

판결 선고2018. 2. 6.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5,116,487원 및 그 중 196,458,622원에 대하여 2016. 7. 15.부터 2016. 8. 31.까지는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25,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과 피고 D, E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6. 2.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 D, E은,

1)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3. 23. 접수

제299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피고 B에게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양도하고, 대한민국에게 각 그에 따른 채권양도통지를 하라.

3. 피고 B와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에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4. 11. 체결된 매매예약을 취소한다.

4.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5.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D, E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며, 원고와 피고 F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6.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1 내지 3항 및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1. 18.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1. 19. 접수 제577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6. 7.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피고 C는 피고 B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6. 8. 접수 제6123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이하에서 개별적으로 지칭할 때는 표 순번에 따라 '이 사건 차 약정'이라 하고, 함께 지칭할 때는 '이 사건 각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그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으며, 피고 B은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1	2009. 3. 11.	160,000,000	2010. 3. 10.(이후 2017. 3. 3.로 변경)	피고 B
2	2009. 9. 15.	34,000,000	2010. 9. 14.(이후 2016. 9. 12.로 변경)	피고 B
3	2009. 3. 11.	225,000,000	2009. 9. 14.(이후 2016. 9. 5.로 변경)	피고 B

2) 피고 회사는 이 사건 1차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9. 3. 13. 전북은행과 한도 200,000,000원, 변제기 2010. 3. 10.로 정한 한도거래약정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2차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9. 9. 25. 국민은행으로부터 40,000,000원을 변제기 2010. 9. 14.로 정하여 대출(기업일반자금대출)받았으며, 이 사건 3차 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2009. 3. 13. 전북은행으로부터 300,000,000원을 변제기 2009. 9. 14.로 정하여 대출(기운일반자금대출)받았다.

3)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피고 회사는 ① 원고가 그 이행을 위하여 지급한 대위변제금액 및 이에 대한 지급일부터 완제일까지 원고가 정한 손해금율(2012. 12. 1.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12%, 2016. 2. 1. 이후는 연 10%)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과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 전일까지 보증료율에 연율 5/1,000을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및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취득한 권리의 보전, 이전 및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등 모든 부채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한다(이 사건 각 약정 제10조).

4) 한편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 회사가 압류·가압류·가처분을 당하거나, 원고가 해당 약정에 의한 신용보증의 채권자와 다른 신용보증의 채권자 중 어느 채권자로부터 신용보증사고의 통지 또는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은 때 등에 피고 회사에 별도의 통지나 최고 없이 원고가 보증하고

있는 금액에 대하여 사전에 구상청구할 수 있다(이 사건 각 약정 제5조).

나. 원고의 보증채무 이행 등

1) 피고 회사는 2016. 2. 26. 은행에 대한 이자지급을 연체하여 그 대출금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2016. 3. 21. 당좌부도로 거래정지처분을 받는 신용보증사고를 발생시켰다.

2) 원고는 2016. 7. 15. 이 사건 1, 2차 약정에 따라 196,458,622원(= 이 사건 1차 약정 161,881,180원 + 이 사건 2차 약정 34,577,442원)을 대위변제하였고, 한편 2016. 4. 19. 전북은행으로부터 이 사건 제3차 약정에 따른 보증채무이행청구를 받았다.

3) 원고가 위 각 구상금채권의 보전 등을 위하여 지출한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은 3,657,865원이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등

1) 피고 C는 2014. 10. 22. 피고 B의 동생 G와, 피고 B 소유인 별지1 목록 제1, 9항 기재 각 부동산과 G 소유인 전주시 완산구 H 대 10㎡ 및 같은 구 I 대 417㎡ 중 16.5/417 지분을 대금 합계 14,200,000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10,000,000원은 피고 C가 2014. 10. 17. B, G의 모 J에게 이미 송금한 10,000,000원으로 갈음하고 잔금 4,200,000원은 2014. 10. 30.까지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피고 B 소유인 별지1 목록 제1,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는 G가 피고 B으로부터 적법하게 대리권을 수여받은 것으로 보인다), 2014. 10. 30. 피고 B 측에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 4,2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과 전주시 완산구 H 대 10㎡가 2015. 5. 15.경까지 등기를 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위 부동산 전체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미뤄지다가,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시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1. 19. 접수 제5775호로, 위 H 대 10㎡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16. 1. 19. 접수 제5776호로,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및 G 소유인 위 I 대 417㎡ 중 16.5/417 지분에 관하여는 같은 등기소 2016. 6. 8. 접수 제61239호로 각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는데, 그 당시 편의상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2016. 1. 18.자 매매계약서(거래가액 2,100,000원), 위 H 대 10㎡에 관한 2016. 1. 19.자 매매계약서(거래가액 3,100,000원),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및 G 소유인 위 I 대 417㎡ 중

16.5/417 지분에 관한 2016. 6. 7.자 매매계약서(거래가액 8,800,000원)가 작성되어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증서로 사용되었다.

2) 별지1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은 2016. 2. 25. 피고 D, E과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3. 23. 접수 제29973호로 채권최고액 52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 D, E으로 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는데, 그 당시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는 서전주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350,000,000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별지1 목록 제3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이하 'K 공장재단'이라 한다)에는 서전주새마을금고 명의의 채권최고액 537,600,000원으로 된 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져 있었다.

3) 피고 B은 2016. 4. 11. 피고 F 주식회사(이하 '피고 F'라고만 한다)와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4. 12. 접수 제38302호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K 공장재단에 대한 임의경매 등

1) 피고 B이 대출금의 이자지급을 연체하는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서전주새마을금고는 K 공장재단에 대하여 전주지방법원 L로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7. 2. 1. 위 신청을 받아들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 한다).

2) K 공장재단은 2017. 7. 18.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M에게 매각되었고(이에 따라 K 공장재단에 관한 피고 D,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그 중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는 모두 말소된 것으로 보인다),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 E에게 260,000,000원, 피고 D에게 218,700,00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어 확정됨으로써 위 피고들은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 13, 17,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 을다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1, 2차 약정에 따라 지급한

196,458,622원, 법적절차비용 중 미수금 3,657,865원과 이 사건 3차 약정에 따른 사전구상금 225,000,000원의 합계 425,116,487원(= 196,458,622원 + 3,657,865원 + 225,000,000원) 및 그 중 위 196,458,622원에 대하여 그 지급일인 2016. 7.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인 2016. 8. 31.까지는 약정에 따른 연 1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과 위 225,000,000원에 대하여 2017. 8.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분 송달 다음날인 2017.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 B이 그 소유의 부동산인 별지 목록 제1, 9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C에게 처분한 것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나. 그러므로 먼저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피고 C에 대하여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임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하여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1995. 11. 28. 선고 95다27905 판결,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다48588 판결 등 참조).

우선,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별지1 목록 제1, 9항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C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원인행위는 그 등기기록상 등기원인 기재(2016. 1. 18.자 매매계약 내지 2016. 6. 7.자 매매계약)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매매계약이 아닌 2014. 10. 22.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 회사가 이자지급을 연체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것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약 1년 4개월이 경과한 2016. 2. 26.경이고, 원고가 이 사건 3차 약정에 따라 보증계약의 이행청구를 받은 것은 2016. 4. 19.로서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후이며, 이 사건 1, 2차 약정에 따라 돈을 지급한 것도 그로부터 약 1년 9개월이 경과한 2016. 7. 15.경인 점, 한편 전북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볼 때 피고 B은 2016. 2.경까지 자신의 개인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도 이자를 연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의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에 대한 사전 또는 사후 구상금채권 및 그에 따른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는 발생하여 있었다 할지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하리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원고가 그 채권자로서 피고 C에게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D, E, F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 B이 그 소유의 부동산인 별지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피고 D, E, F에 처분한 것이 이 사건 각 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것으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고 있다.

나. 피보전채권의 존재 여부

1) 피고 D, E에 대하여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위 인정사실에 관하여 살펴보면,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은 비록 피고 B이 피고 D, E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2016. 2. 25.경에는 아직 발생하지 아니한 상태였으나, 당시 원고와 피고 B 사이에는 이미 이 사건 각 약정에 대한 연대보증약정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고 있었고, 피고 회사의 경영상태 등에 비추어 가까운 장래에 이 사건 각 약정의 연대보증인인 피고 B이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게 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일로부터 하루 후인 2016.

2. 26. 이자지급 연체로 인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2016. 4. 19.경 이 사건 3차 약정에 따른 이행청구를 받음으로써 위 약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사전구상금채권 및 그에 따른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으며 2016. 7. 15.경 원고의 대위변제로 인하여 이 사건 1, 2차 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에 대한 사후 구상금채권 및 그에 따른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도 현실적으로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각 연대보증채권은 그 이행기 도래 여부를 불문하고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피고 F에 대하여 위에서 본 것처럼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연대보증채권이 2016. 2. 25. 체결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대하여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는 이상, 그 후 2016. 4. 11. 체결된 이 사건 매매예약에 대하여 행사하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도 될 수 있음은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다.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등

1) 피고 D, E에 대하여 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그 소유의 부동산을 채권자 중의 어느 한 사람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다237186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8 내지 1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시가감정축탁 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전북은행, 국민은행, 주식회사 우리카드, 우리은행, 하나은행, 하나카드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서전주새마을금고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체결된 2016. 2. 25.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은 합계 3,905,280,915원이었던 반면, 소극재산은 원고와 피고 D, E에 대한 채무 등 합계 6,143,618,941원이 있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282,0002) 2016. 1. 18. 기준 시가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에도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하 별지1 목록 제2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위 표의 순번 11 내지 14, 16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도 같다.	원고	425,116,487
2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571,710,000	피고 D	200,000,000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282,0002) 2016. 1. 18. 기준 시가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에도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하 별지1 목록 제2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위 표의 순번 11 내지 14, 16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도 같다.	원고	425,116,487
3	별지1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	201,780,000	피고 E	200,000,000
4	별지1 목록 제4항 기재 부동산	9,514,8003) 사무실 9,223,200원 + 변소 291,600원	N	190,000,000
5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	498,366,000	O	120,000,000
6	별지1 목록 제6항 기재 부동산	675,000	P	140,000,000
7	별지1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	213,060,000	Q	200,000,000
8	별지1 목록 제8항 기재 부동산	119,475,000	R	250,000,000
9	별지1 목록 제9항 기재 부동산	8,959,500	피고 F	1,000,000,000
10	서울 서초구 S, T 지상 주택 301호	601,147,7464) 2016. 3. 22. 기준 시가는 1,200,000,000원이나, 신한은행 명의 2002. 3. 11.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피담보채권(2017. 8. 14. 기준 원금 598,852,254원, 이자 22,461,896원, 채무자가 피고 B이 아닌 천성여객자동차합자회사인 채권이며, 2016. 11. 11. AC에게 위 확정채권이 양수되었다)을 고려하면 위 부동산의 잔존가치는 601,147,746원(= 1,200,000,000원 - 598,852,254원)가량으로 추정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나아가 그 시가를 1,200,000,000원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명백하다.	U	200,000,000
11	김제시 V 임야 18,347㎡	348,593,000	전북은행	1,259,800,000
12	당진시 W 임야 212㎡ 중 59,238.7/853,014 지분	2,267,284	대한민국 (조세)	5,000,000
13	전북 완주군 X 임야 33,058㎡ 중 1/3 지분	33,058,000	하나은행	163,751,236

1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2,282,0002) 2016. 1. 18. 기준 시가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에도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하 별지1 목록 제2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위 표의 순번 11 내지 14, 16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도 같다.	원고	425,116,487
14	전북 완주군 Y 임야 39,464㎡	165,748,800	서전주 새마을금고	728,000,000
15	순천시 Z 임야 33,521㎡	808,504,0005) 2016. 6. 14. 기준 시가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에도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우리은행	720,000,0006) 2017. 9. 14.자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피고 B은 우리은행으로부터 2016. 1. 15. 9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6. 1. 20. 630,000,000원을 대출받아 대출 총 잔액이 720,000,000원이 되었다가 2016. 3. 4. 630,000,000원을 상환하여 대출 잔액이 90,000,000원으로 감액되었으므로, 2016. 2. 25.경 피고 B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는 72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채무액을 90,000,000원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명백하다.
16	전주시 덕진구 AA, AB 지상 철골조 1층 공장 2,100㎡ 등	317,463,300	국민은행	340,000,000
17	전북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028,573	하나카드	1,951,218
18	하나은행에 대한 예금채권	1,647,912		
합계	3,905,280,915		6,143,618,941	

다) 결국 피고 B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2. 25. 피고 D, E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6. 3. 23. 피고 D, E에게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별지1 목록 제2 내지 8항 기재 각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으로서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이에 대한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D, E의 악의는 추정된다.

2) 피고 F에 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점, 그런데 이 사건 매매예약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일인 2016. 2. 25.로부터 약 1개월 후인 2016. 4. 11.경 체결되었고, 그 사이 피고 회사는 이자연체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당좌부도가 발생하는 등 그 운영상황이 계속하여 악화되었던 점 등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 B은 이 사건 매매예약 체결 당시에도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B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6. 4. 11. 피고 F와 사이에 이 사건 매매예약을 체결하고 다음 날 피고 F에게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으로써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을 처분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담보를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행위로서 원고와 같은 일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되고, 피고 B으로서의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이에 대한 채권 변제가 어려워진다는 점에 관한 인식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사해의사가 인정되며, 나아가 수익자인 피고 F의 악의는 추정된다.

라. 피고 D, E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B에게, 피고 D는 2014. 1. 20.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E은 2004. 6. 9. 200,000,000원을 대여하였으며,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 피고들은 피고 회사의 자금사정이나 피고 B의 채무초과 상태를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항변한다.

을 제1, 2호증, 을마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D가 2014. 1. 20. 피고 B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00,000원을 송금하는 등 2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E이 2004. 6. 9. 피고 B에게 200,000,000원을 대여하면서 2004. 12., 2005. 6., 2005. 12., 2006. 6. 4.회에 걸쳐 분할하여 변제받기로 약정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 E은 피고 B에게 위 대여금에 대한 변제를 지속적으로 요청하였고 2007. 4. 9. 위 차용금에 대한 담보를 위하여 액면금 400,000,000원인 약속어음을 교부받기도 하였으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차15131호로 피고 B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기도 하였음에도 이를 변제받지 못하던 중 피고 B과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 D 역시 대여시로부터 약 2년간 변제를 받지 못하다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바, 위와 같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체결 경위에 앞서 본 바와 같은 담보제공행위와 사해행위와의 관계를 보태어 보면, 피고 D, E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수익자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반복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들이 선의의 수익자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 E의 위 항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사해해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

1) 그렇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우선, 피고 D, E은 피고 B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전주등기소 2016. 3. 23. 접수 제29973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K 공장재단이 임의경매로 매각되어 이에 관한 피고 D, E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는 대신,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 D, E이 별지2 목록 기재 각 채권을 취득하게 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아래에서 보는 법리에 따라 피고 D, E은 피고 B에게 위 각 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무자인 대한민국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할 의무가 있다.

한편 K 공장재단의 매각으로 별지1 목록 제5항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F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7) 도 이미 말소된 반면, 그 배당절차에서 피고 F가 배당을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라 원상회복되어야 할 것은 따로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에서 보는 법리에 따라 장차 진행될 추가배당 절차에서도 피고 F가 담보가등기권자로 배당을 받아서는 아니 되므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매매계약의 취소청구 부분은 여전히 그 소의 이익이 긍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E은, 위 채권 중 원고가 다른 채권자들과의 관계에서 그 채권액에 따라 안분비례하여 배당받을 금액만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환원시키는 제도(민법 제407조 참조)일 뿐만 아니라, 수익자가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와의 사해행위로 취득한 근저당권에 기하여 배당에 참가하여 배당표는 확정되었으나 그 배당금을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은 수익자가 취득한 배당금지급청구권 전부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하고(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8687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방법으로 원상회복이 이루어지면 경매법원은 이를 배당재단으로 하여 취소채권자뿐만 아니라 당초 경매절차에서의 적법한 배당요구채권자 전체를 대상으로 추가배당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33069 판결 등 참조), 피고 E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 B, D, E, F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이원

판사양백성

판사박가람

별지

1) 원고는 피고 B의 도이치파이낸셜, BMW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두산캐피탈 등에 대한 채무도 소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8호증의 기재 등만으로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위와 같은 채무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를 피고 B의 소극재산으로 고려하지 않기로 한다.

2) 2016. 1. 18. 기준 시가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에도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이하 별지1 목록 제2 내지 9항 기재 각 부동산 및 위 표의 순번 11 내지 14, 16 기재 각 부동산의 경우도 같다.

3) 사무실 9,223,200원 + 변소 291,600원

4) 2016. 3. 22. 기준 시가는 1,200,000,000원이나, 신한은행 명의 2002. 3. 11.자

근저당권(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의 피담보채권(2017. 8. 14. 기준 원금 598,852,254원, 이자 22,461,896원, 채무자가 피고 B이 아닌 천성여객자동차합자회사인 채권이며, 2016. 11. 11. AC에게 위 확정채권이 양수되었다)을 고려하면 위 부동산의 잔존가치는 601,147,746원(= 1,200,000,000원 - 598,852,254원)가량으로 추정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나아가 그 시가를 1,200,000,000원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명백하다.

5) 2016. 6. 14. 기준 시가이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시에도 변동이 없었을 것으로 추인되므로 위와 같이 인정한다.

6) 2017. 9. 14.자 우리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따르면, 피고 B은 우리은행으로부터 2016. 1. 15. 90,000,000원을 대출받고, 2016. 1. 20. 630,000,000원을 대출받아 대출 총 잔액이 720,000,000원이 되었다가 2016. 3. 4. 630,000,000원을 상환하여 대출 잔액이 90,000,000원으로 감액되었으므로, 2016. 2. 25.경 피고 B의 우리은행에 대한 채무는 720,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채무액을 90,000,000원으로 보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음은 명백하다.

7) K 공장재단 전체에 이미 서전주새마을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는 점, 피고 F 역시 피고 B에 대한 기존 채권자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가등기는 담보가등기로 봄이 상당하다.